##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생회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라고 한다. (이하 본회)

제2조(목적) 본회는 학생회원간의 연대와 상호존중을 이룩하고, 학내 구성원의 권리 실현과 자치의 생활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본교 서울캠퍼스의 의과대학 소속 학부 및 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4조(구성)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회는 학생총회,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집행국을 둔다.

### 제5조(권한)

- 1. 본회는 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2.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 속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자격)

- 1.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의 경우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자 격이 정지된다.
- 2. 징계자의 경우, 〈1〉 재학 중인 상태에서 징계를 받음.
  - 〈2〉당사자가 요청하여, 의과대학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음,

두 조항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본회의 회원으로서 자격을 가진다.

### 제7조(권리)

-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2. 본회의 회원은 제반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4. 본회 회원은 각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 5.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 제8조(임무)

- 1.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기구) 이 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산하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 2. 집행기구: 학생회 집행국
- 3. 특별기구

## 제2장 의결기구

## 제1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11조(소집)

- 1. 학생 총회는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6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이 7일내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학생 총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10일전에 공고하여야한다. (단, 전항의 단성의 경우엔 예외로 한다.)

제1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 제13조(권한)

- 1. 학생총회는 집행국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2. 학생총회는 정, 부 학생회장 또는 집행국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3. 정, 부학생회장의 불신임 결정에 관한 학생총회는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집행 아래,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총회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총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8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절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

제15조(지위)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이하 의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 의결기 구이다.

#### 제16조(구성)

- 1. 의대회는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된 의과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예과 정학생회장, 예과 부학 생회장, 각 학년 정대표로 구성된다.
- 2. 대표자가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시 전까지 본 회의 의장에게 연락하여 대리인에게 모든 권 한을 위임할 수 있다.
- 3. 의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 제17조(소집)

- 1. 정기 의대회는 학기 당 한 번 의장이 소집한다.
- 2. 임시 의대회는 필요시에 의장이 소집한다.

- 3. 임시 의대회는 재적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7일내 소집한다.
- 4.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 될 시, 의대회의 소집 및 의결은 전화, 문자,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8조(의결)

- 1. 재적 대표자의 60%이상의 참여로 개회한다.
- 2. 재적 대표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 3. 의결권은 선거로 선출된 의과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예과 정학생회장, 예과 부학생회장,
- 각 학년 정대표에게 주어진다.
- 4. 발언권은 의대회 구성원 전체에게 주어진다.

제19조(업무 및 권한) 의대회는 학생회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학생대표자 회의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1. 학생총회 소집 및 요구권
- 2. 본회 활동의 총노선 및 각 집행부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
- 3. 학생회칙 개정과 발의 및 의결권
- 4. 특별기구 구성권
- 5. 학교당국과 의과대학 학생회 전반에 대한 제정 및 의결권
- 6. 기타 의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 제20조(궈한)

- 1. 회의 진행에 필요한 경우 집행국에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 2. 학생총회 소집 요구

#### 제21조(안건상정)

- 1. 의장 또는 집행국은 대회 개시 전까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2.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시 상정할 수 있다.

#### 제22조(대회 회의록)

- 1. 의대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녹취록을 기록해야 하고, 요구가 있을 시 부분 또는 전체 공개한다.
- 2. 회의록에 대회의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다. 회의록 또는 녹취록의 작성은 본회의 집행국장 1인이 작성하며 대표자 1인이 감독한다.

### 제23조(방청•발언권)

- 1.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를 방청할 수 있다. (단, 대회 개시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방청을 요청해야 한다.)
- 2. 이 회의 회원은 각 의결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의장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 3.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회의 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3장 정, 부학생회장

제24조(지위) 정,부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의대회를 대표한다.

제25조(선출)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회원 가운데 6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로서 전체회원의 과 반수의 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6조(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정 후 그 해 본과 2학년 또는 본과 1학년의 종강(진급사정회의 마감일) 중 늦은 날로부터 다음해 당선 확정 후 그 해 본과 2학년 또는 본과 1학년의 종강(진급사정회의 마감일) 중 늦은 날까지로 한다.

### 제27조(임기의 예외)

- 1. 의과대학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업무와, 국가고시 등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일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인수인계 기간을 둔다.
- 2. 인수인계 기간은 당선 후부터, 본과 4학년 국가고시(필기)가 끝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 3. 인수인계 기간 중, 당해 당선 정부학생회장(이하 당해 당선인)과 전년도에 당선된 정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하 전년도 당선인)은 의과대학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시 서로 상의 하에, 서로의 모 든 권한과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 4. 전항의 '모든 권한과 자격을 위임한다'는 학생회장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28조(신분보장) 정,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일체의 신분이 보장된다.

## 제29조(업무 및 권한)

- 1. 정,부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2. 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3. 정,부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외 연합기구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 4.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의대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5. 정,부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과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6. 정,부학생회장은 집행국 업무를 총괄한다.
- 7. 정학생회장은 전학대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
- 8. 부학생회장은 정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정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30조(활동비)

- 1. 회장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 2. 활동비의 사용은 이 회의 회칙에 어긋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되며 이 회의 업무 또는 의과대학에 관련이 있는 활동만 가능하다.
- 3. 활동비의 액수는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 때 액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 예산안의 5%를 넘을 수 없다.
- 4. 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한다.

## 제4장 집행국

제31조(지위) 집행국은 정·부학생회장의 결의 사항에 입각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상설적인 집행단위이자 정책단위이다.

## 제32조(구성 및 활동기간)

- 1. 집행국의 구성은 당해 학생회장에게 전임한다.
- 2. 각 집행국장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 3. 집행국의 활동기간은 당해 인수인계 기간부터를 시작으로 한다.

## 제33조(선출)

- 1. 집행국장은 학생회장이 전임한다.
- 2. 집행국원은 각 집행국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회장이 임명한다.
- 3. 학생회장과 집행국은 임의로 집행국장 중 두 명의 대표 집행국장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4조(업무)

- 1. 사업 및 예산의 집행
- 2. 본회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 결산서 작성
- 3. 기타 집행국의 업무

## 제35조(활동비)

- 1. 집행국의 원활한 활동과 품위 유지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 2. 활동비는 각 분기의 시작 전에 집행국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된다.
- 3. 활동비의 사용은 이 회의 회칙에 어긋나는 방향이어서는 안 되며 이 회의 업무에 관련이 있는 활동만 가능하다.
- 4. 다음 분기 활동비의 액수는 집행국이 결정하고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이 때액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체 예산안의 10%를 넘을 수 없다.
- 5. 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의과대학 대표자 회의에서 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기감사에서는 세부 내역까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제36조(특별부서) 학생회장은 임의로 집행국 이외의 집행부서와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 제5장 예과학생회

### 제37조(구성)

- 1. 예과학생회의 회원은 해당 학년도 의과대학 의학부 1학년, 2학년 전체학생(이하 예과 학생)으로 구성한다.
- 2. 예과학생회는 해당 학년도 예과 학생들의 학생활동을 위하여 본회의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별도의 규정과 조직을 갖는다.

### 제38조(예과학생회 학생회장)

- 1. 예과학생회 학생회장은 예과 학생을 대표하여 본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2. 예과학생회 정, 부학생회장은 본교 예과에 재학중인 학생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3. 예과학생회 학생회장은 예과학생회 임원들을 지명할 권리를 갖는다.

제39조(업무 및 권한) 예과학생회의 업무 및 권한은 본회의 회칙에 따른다.

## 제6장 회칙 개정

#### 제40조

회칙 개정은 안건상정과 동일한 규칙을 따른다.

## 제 7장 재정

제41조(원칙) 이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42조(재정운용세칙) 그 밖에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제43조(심의·승인)

- 1. 회비를 사용하는 집행국, 특별기구는 예산안·결산을 작성하고, 의대회에서 공개하여야 한다.
- 2. 의대회는 제 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 3. 의대회에서 승인된 예산안·결산은 공개되어야 한다.

제44조(적용범위) 집행기구, 특별기구 등의 재정 운용에 적용한다.

제45조(사전 승인에 관한 특례) 회비의 사용 시점까지 의대회가 개최되지 못한 경우, 재정운용세칙에 따른 임시 예산안을 항목에 한해서 따를 수 있다.

## 제47조(재심의)

 의대회에서 예산안·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기구에의 회비 지급을 유보하고 재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8장 선거시행세칙

## 제50조 총칙

### 1항(목적)

본 세칙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부학생회장 선거(이하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원칙)

- 가.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 나.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이전 의과대학 학생회의 사업과 활동을 발전적으로 평가, 지향하여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는 과정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 다.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회원들이 의과대학 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해야 한다.
- 라.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그 외 사항은 의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마. 본 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기구의 자치 규정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산하기구 및 특별기구의 선거관련 자치규정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에는 해당 시행세칙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3항.(구성원의 책임)

집행한다.

가, 모든 회원은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1조 의과대학 선거 관리 위원회

1항(위상)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의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2항(목적)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 대중적으로 치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항(업무 및 권한)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가.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 및 활동을 기획,

- 나.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다. 세칙과 선관위가 각 선거운동 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인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본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 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라. 의과대학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의과대학 선관위)는 선거 후 업무를 끝내고 해체한다. 4항(구성)
- 가. 선관위원장은 당해 정학생회장으로, 부위원장은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의대회로 구성한다.
- 나. 비상대책위원회로 이루어졌을 경우 선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비상대책부위원장으로 한다.
- 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되었을 시 선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의결권을 하나만 가진다.

### 제52조 선거운동본부

### 1항(역할)

- 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후보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 선전 등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 나. 선본은 후보자와 선본 구성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정세 분석, 정책공약, 입장 등을 생산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과 동시에 실현 가능한 당선 후의 계획을 준비한다.
- 다. 선본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2항(구성)
- 가. 각 선본은 의과대학 학생회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으로 구성되며, 예과 학생회 선본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한다.(단, 예과 학생회의 선본장은

의과대학 학생회의 선본장이 겸직하도록 한다.)

나. 정·부후보는 당해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여야 한다.

#### 3항(선거운동본부장)

- 가. 선본장은 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들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 나. 선본장은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 4항(선거운동본부원)

- 가.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의 활동에 참여한다.
- 나, 선본원은 본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 5항(선본원 신고)

- 가. 선본원의 자격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재적생으로 한다.
- 나. 각 선본은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전공,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다. 최초 선본원 등록은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를 통해서 하며, 이후부터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선본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라. 선본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원인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6항(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가,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 하에 진행한다.
- 나.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7항(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가. 의과대학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 나.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이행할 의무
- 다.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 라,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 제53조 선거

#### 1항(선거 일정)

- 가,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선거일은 의대회에서 결정한다.
- 다. 이외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의과대학 선관위에서 정한다.
- 라. '나'항의 일정은 의대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2항(선거권)

가. 유권자는 현재 재학 중인 본 회의 회원으로 한다.

#### 3항(피선거권)

- 가, 정· 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 나, 예과 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입후보자는 2인 1조
- 4항(후보자 등록) 의과대학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구비하여 선거 시행결정

미팅 30분 전까지 의과대학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의과대학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재학 증명서
- 2) 대표 참관인, 선본원 명단과 재학 증명서 (선본원은 재적 증명서 가능)
- 3) 출마 소견서, 후보 약력 소개서
- 4) 후보자 사진 (포스터용 각 2매)

### 5항(공청회)

- 가. 공청회는 의과대학 선관위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 나. 후보자는 공청회의 자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단, 이를 어길 시 징계가 주어진다.)
- 다. 공청회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공약발표 및 참석자의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 제54조 투표

### 1항(투표일과 투표시간)

- 가. 투표는 2일에 걸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투표시간은 첫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 둘째 날 10시부터 19시까지이다.
- 다.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투표의 시작을 정시에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의과대학 선관위의 논의 및 의결로 투표시간을 당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2항(투표소)

- 가. 투표소는 의과대학 선관위가 논의하여 결정한다.
- 나. 투표소에는 의과대학 선관위 홍보물, 학과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 3항(투표자의 자격)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신분을 확인 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 가.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으로 제한한다.)
- 나, 본 회의 회원이라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자

#### 4항(투표절차)

- 가. 투표권자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선관위의 선거인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
- 2) 인증번호 배부
- 3) 전자투표 실시
- 다. 투표절차를 진행할 시 선관위원과 참관인은 반드시 유권자의 신분확인(얼굴과 이름, 학번)을 실시한다.

### 제55조 개표

1항(개표시간) 개표시간은 의과대학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2항(개표장)

- 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의과대학 선관위가 결정, 공고한다.
- 나.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의과대학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 다. 후보자와 각 선본원들은 개표시간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한다.

#### 3항(개표절차)

가. 전자투표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1) 투표인 수 공고
- 2) 개표에 필요한 암호 입력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암호는 의과대학 선관위장, 전자투표시행 업체가 가지고 있는다.)
- 3) 개표
- 4) 개표 결과 공개 및 공고
- 다.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는 의과대학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의 책임 아래 수행한다.

#### 4항(무효투표

- 가. 기계적 오류 또는 중복투표 등 선거과정에서 생긴 무효표는 의과대학 선관위가 표처리에 대하여 논의한다.
- 나. 표처리에 대한 논의 결과는 논의가 끝난 후 즉시 의과대학 SNS에 공지한다.

### 5항(기권투표)

- 가. 기권투표는 회원의 권리로서 투표 시 보장받아야 한다.
- 나. 투표 시(전자투표 및 종이투표)에는 반드시 기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권란을 만들어야 한다.
- 다. 기권표는 무효표와 구분된다.

#### 6항(연장투표)

가. 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선관위와 선본의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 투표를 할수 있다. 또한 연장 투표 시,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의과대학 선관위의 논의결정으로 재선거여부를 결정한다.

### 제56조 당선

### 1항(당선의 기준)

가. 전자투표의 경우 당선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 단선의 경우 찬성과 반대의 득표차가 기권표 보다 커야한다. 기계적 오류로 인하여 생긴 무효표는 기권표에 합산한다.) 나. 선거가 단선으로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는 투표를 실시한 선거권자의 과반의 찬성을 득표해야 하며, 찬성과 반대의 득표 차는 기권표 수보다 커야 한다.

# 2항(당선공고) 가.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의과대학 선관위원장(혹은 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당선공고에 관련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나.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 제57조 선거자금 공영제도

1항(목적)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가 학우들의 재정능력에 좌우되지 않게 하며 선거운동비용 중 일부를 의과대학 학생회비에서 책정하는 방식이다.

### 2항(운영원칙)

- 가. 선거자금공영제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중 10% 이내에서 집행된다.
- 공통으로 제작하는 인쇄물의 일부(혹은 전체)를 선본의 요구대로 의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 나. 선거자금공영제도로 사용할 홍보용 인쇄물의 종류, 개수, 규격 등은 의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 3항(조건) 선거자금공영제도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 집행된다.

가.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입후보한 후보자의 선거운동본부

제58조 선거시행 세칙의 효력발생

1항 본 시행세칙은 의과대학 대표자회의의 동의를 거쳐 48대 의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